교육 영상 시연용 가상 자료 — 회사·인물·금액은 모두 지어낸 것입니다

냉장 운송 계약서 (발췌)

세움식품(가명) ↔ 한결물류(가명) · 계약일 2026년 1월 10일 · 분쟁 관련 조항만 발췌

세움식품 주식회사(가명, 이하 «갑»)와 한결물류 주식회사(가명, 이하 «을»)가 맺은 냉장 운송 계약서 중 일부 조항을 옮긴 것이다. 나머지 조항은 생략.

제5조 (온도 관리)

① 을은 냉장 화물을 운송하는 동안 화물칸 온도를 0℃ 이상 6℃ 이하로 유지한다.

② 을은 운송 중 온도 기록을 남기고, 운송일부터 1년 동안 보관하며 갑이 요청하면 제출한다.

제8조 (재위탁)

을은 갑에게 미리 알린 뒤 운송 업무의 일부를 협력 운송사에 맡길 수 있다. 이 경우 협력 운송사의 잘못은 을의 잘못으로 본다.

제9조 (손해 배상)

① 을의 잘못으로 화물이 훼손되면 을은 갑의 손해를 배상한다.

② 배상액은 사고 1건당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 다만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화물 이상 통지)

갑은 화물이 도착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화물 이상을 을에게 서면(전자우편 포함)으로 알려야 한다.

제12조 (운임 지급)

① 갑은 을의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운임을 지급한다.

② 운임 일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갑은 다툼이 없는 금액은 기한 안에 지급한다.

제15조 (분쟁 해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갑: 세움식품 주식회사 (가명)	을: 한결물류 주식회사 (가명)